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45

발의연월일: 2024. 11. 7.

발 의 자: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이인선 • 최은석 • 김태선

김용태 · 장경태 · 윤상현

모경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맹견 소유자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신고대상 동물 및 그 소유자에 대한 확인절차가 까다로워 실질적인 신고처리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고를 접수한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도 업무 우선순위에 밀려 법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목줄 미착용 맹견 등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상해, 사망, 다른 동물에 대한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와 안전조치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동물관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등으로부터 사람과 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동물관리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와 안전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물관리지도원을 위촉할 수있다.
 - ② 동물관리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 관리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감시 및 계도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맹견 관련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감시 및 계도
 - 3. 제22조 각 호의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 출입 감시 및 계도
 - 4. 그 밖에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의 관리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동물관리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동물관리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

- 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동물관리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동물관리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동물관리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 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관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동물관리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 다.
-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 게 된 경우
- ⑧ 그 밖에 동물관리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 ④ 동물관리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동물관리지도 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관 리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 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동물관리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동물관리지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동물관리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권한을 남용한 경우
-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 이 어렵게 된 경우
- 8 그 밖에 동물관리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